

진정서에 대한 의견서 (주)페라리스파워 관련

2020회합100063 회생

먼저 (주)페라리스파워의 구자일 대표이사가 진정서를 제출한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채무자 회사는 진정서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1. (주)페라리스파워 소유의 특허권은 핵심자산으로 Ferraris Inc.로 이전되어야 함

채무자 회사와 구자일 대표가 심각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항이며, 채무자 회사는 (주)페라리스파워의 청산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판단 사항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구대표는 지난 1월부터 (주)페라리스파워의 대표이사 가수금과 특허권, 공장 설비, 보증금 등 자산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제시하였으나, 이에 채무자 회사는 구대표가 특허권을 개인적으로 보유할 경우 핵심 자산이 없는 Ferraris Inc.의 주주가치 하락이 우려가 되어 반대하였습니다.

2021년 3월 9일 채무자 회사가 지명한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는 (주)페라리스파워 소유의 특허를 Ferraris Inc.로 이전을 전제로 한 (주)페라리스파워의 법인 청산 관련 주주총회 소집안건에 대해서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최된 2021년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만일 Ferraris Inc. 유상증자가 특허 이전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특허를 이전하기 위한 다른 차선책 강구를 찾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주)페라리스파워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며"라고 결의하였으며 이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은 안건을 결의한 것으로서 이는 전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첨부와 같이 내용증명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으므로, 만일 특허권의 양도가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양도에 관해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양도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자산 양도의 가액, 상대방과 양도 조건 등이 보다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피투자기업에 대한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 사실이 없음

피투자기업의 경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에 있으며 경영 성과와 자본 충실화 등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가 질 수밖에 없고, 주주나 이해관계자 등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1일 구대표는 (주)페라리스파워의 주주총회에서 법인 청산을 일방적으로 결의하였으며, 이는 주주총회 소집안건에 대한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되지 않은 흠결이 있었고 또한 핵심 자회사의 청산에 대해 Ferraris Inc.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Ferraris Inc. 주주들의 동의절차를 밟는 것은 채무자 회사를 믿고 Ferraris Inc.에 추가로 투자한 소액주주들(개인투자조합 3.5% 포함해서 약 13.5% 지분 보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당초 (주)페라리스파워의 2대 주주였지만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구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여 Ferraris Inc.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교환을 하였고 현재는 Ferraris Inc.의 주식만 소유하고 있으며, (주)페라리스파워의 사외이사 지위만을 유지하고 있어서 (주)페라리스파워의 통제는 이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Ferraris Inc.의 주주총회와 (주)페라리스파워의 이사회를 통해서만 정당하게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이외에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 사실이 없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Ferraris Inc.의 영업력 회복과 자본 유치를 원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의 확충을 위해 Ferraris Inc.의 증자를 추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결의하지도 않고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3백만불 이상의 유상증자 안건을 기록한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향후 경영의 악화나 유상증자의 실패가 현실화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Ferraris Inc.의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Ferraris Inc.의 대표이사는 외부에 책임을 돌리지 말고 주주들에게 회사의 경영현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자본 확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 1. 2021. 5. 4. 내용증명(이사회 결의와 다른 주총 결의사항의 확인 및 관련 시정 조치 요청)

2. 특허권 양도 관련 통화내용(법무법인 화우 변리사). 끝.

2021. 5. 14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리인 성 낙 민



서울회생법원 제2부 귀중

첨부 1. 2021. 5. 4 내용증명

법무법인 時空

SIGONG LAW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 15층 (우)06142

Tel: (02) 561-7123 Fax: (02) 561-7166
Mail: law@sigonglaw.com www.sigonglaw.com

2021. 5. 4.

내용증명우편

수 신: 1. ㈜페라리스파워 대표이사 구자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6번길 4, 9층(수내동, 경동빌딩)

2. ㈜페라리스파워 대표이사 구자일

대전 대덕구 신일서로67번길 54, 페라리스파워 공장

발 신: 법무법인 시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 15층

담당변호사 최승진, 김승아(담당변호사 김승아)

제 목: 이사회 결의와 다른 주총 결의사항의 확인 및 관련 시정 조치 요청

귀사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주식회사 벨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발신인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1. 귀사도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2021년 3월 9일 귀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안건을 의안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안건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제3호 의안: ㈜페라리스파워 청산 진행 검토 건

의장은 2021년 3월중 실시하는 Ferraris Inc.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서 ㈜페라리스파워 소유의 특허를 Ferraris Inc.로 이전을 전제로 한 ㈜페라리스파워의 법인 청산 진행이 필요함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바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2. 하지만 이후 개최된 2021년 3월 23일 주주총회에 대한 귀사의 의사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호 의안: ㈜페라리스파워 청산 진행 검토 건



이 우편물은 2021-05-04
제 3110409089911-3110409089912호로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특별시관우체국장

대한민국 KOREA

의장은 2021년 3월중 실시하는 Ferraris Inc. 유상증자시, 4월 7일까지 최소 USD3,000,000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결과에 따라 ㈜페라리스파워 소유의 특허를 Ferraris Inc.로 이전을 전제로 한 ㈜페라리스파워의 법인청산 진행이 필요함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바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만일 Ferraris Inc. 유상증자가 특허 이전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특허를 이전하기 위한 다른 차선택 강구를 찾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페라리스파워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페라리스파워 소유의 특허를 Ferraris Inc. 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페라리스파워의 특허를 설명하고, 이중에서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현재 상태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이에 전원 만장 일치로 승인 가결하였다.

3. 그런데 귀사의 상기 주주총회 의사록의 해당 내용 중 둘째와 셋째 단락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과 다르며, 특히 둘째 단락인 “만일 Ferraris Inc. 유상증자가 특허 이전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특허를 이전하기 위한 다른 차선택 강구를 찾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페라리스파워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며”라는 부분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은 안건을 결의한 것으로서 이는 전적으로 위법합니다.
4. 특히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안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사회가 부의한 안건의 내용에 구속되는바, 발신인은 발신인이 지명한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에서 상기와 같이 그 권한을 위임한 바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이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사유를 구성합니다.
5. 한편, 귀사도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귀사는 이미 2021. 2. 1.경에도 위법한 주주총회를 운영하였고 이에 대해 발신인 회사가 이를 지적하자, 귀사



는 Ferraris Inc.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귀사의 청산 관련 동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발신인 회사 역시 귀사를 신뢰하여 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 3. 9. 개최된 Ferraris Inc.의 주주총회에서 “(주)페라리스파워 소유의 특허를 Ferraris Inc.로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주)페라리스파워의 법인 청산 진행”이라는 안건에 대해 발신인 회사는 명백히 이를 반대하였고 이는 Ferraris Inc.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 따라서 발신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개최되어 결의된 귀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해당 결의사항은 철회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바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위법한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시정을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만일 본연의 이사회 취지와 다르게 귀사 소유의 특허가 Ferraris Inc.로 이전되지 못하는 경우(귀사의 대표이사가 귀사의 가수금과 상계하여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 등) 귀사의 모회사인 Ferraris Inc.에 발생하는 지분가치 하락 등 손해에 대해 당사는 귀사 및 귀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각종 민, 형사상 이외제기를 아니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페라리스 파워 청산 관련 협의과정(2021. 2. 3)

2. Ferraris Inc.의 주주총회 의사록

3. (주)페라리스파워 이사회 의사록

4. (주)페라리스파워 주주총회 의사록 - 끝 -

발신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공(SIGONG LAW)

담당변호사 최 승 진

담당변호사 김 승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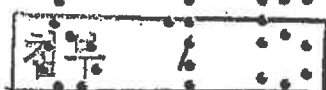


(주)페라리스 파워 청산 관련 협의과정

2021. 2. 3

(주)밸류인베스트코리아

1. 2020년 12월 28일(월) 점심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구자일 대표가 법인 유지 비용의 한계를 언급하며 (주)페라리스 파워(이하 "페라 한국")의 청산 필요성을 잠깐 언급하였음
 2. 2021년 1월 8일(금) 페라 한국 2021년 임시 이사회 개최 (1월 15일) 이메일 수신 (의안: 페라 한국 청산 및 청산인 선임 그리고 관련 주주총회(2021. 2. 1) 소집의 건). 첨부 공고문에 일자가 누락됨
 3. 2021년 1월 13일(수) 구대표가 청산인을 당사 직원인 김영화 사외이사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사 관리인은 현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피력하여 전달하였음. 이에 구대표가 본인이 청산인을 관행대로 하겠다고 받아들였고 청산 관련 진행과정을 논의하기로 함
 4. 2021년 1월 20일(수) 오후 2시 페라 한국의 청산 관련 구대표와 미팅 진행 구대표는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과 페라 한국의 특허권, 공장 설비, 보증금 등 자산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청산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이에 당사는 구대표 명의로 특허권 등을 귀속시키는 법인 청산 시 세무, 법무 측면의 검토서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구대표는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함. 당사 관리인은 미국 Ferraris Inc.(이하 "페라 미국")의 핵심 자산인 페라 한국의 청산에 대한 페라 미국의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페라 미국의 정관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해줄 것을 요구함.
 5. 2021년 1월 25일(월) 페라 한국의 청산 관련 페라 미국의 답변을 당사가 이메일로 전달받음
 6. 2021년 1월 29일(금) 오후 4시 페라 한국의 청산 관련 구대표와 2차 미팅 진행 구대표는 당사가 요구한 세무, 법무 검토서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비용지불 문제로 전화로 자문을 받았다고 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못함. 이에 당사 관리인은 구대표가 특허권 등을 개인적으로 보유할 경우 핵심 자산이 없는 페라 미국의 주주가치 하락이 우려가 되고 발명자인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매수할 때 가치평가가 있어야 하는 등 세무, 법무 검토가 더 필요하니 청산 안건의 주총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강행할 경우 관련 이사회에서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음
 7. 2021년 2월 1일(월) 오전 9시 페라 한국법인은 주총을 강행함
 8. 2021년 2월 2일(화) 저녁 7시 30분 구대표 사무실을 방문하여 페라 한국의 청산과정에서 구대표가 설비, 보증금 등 자산을 인수하는 것은 진행하되, 회사 소유 특허권은 페라 미국이 인수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였음. 페라 한국에 대한 구대표의 채권을 넘기고 신주 발행을 받는 방안도 제시하였음. 이에 구대표는 페라 미국이 특허권을 양수할 경우 가치평가가 필요하고 법률 비용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며 동 제안을 사실상 거부함
- 당사는 페라 한국의 주총 개최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면 청산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구대표는 페라 미국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페라 한국의 청산 관련 동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음 (절차 보완)

○  ○

주주총회 의사록

2021년 3월 9일 오후 14시 Ferraris Inc. 회사 자회사 Ferraris Power Co., LTD.
공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87-9) 회의실에서 Ferraris Inc.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발행주식 총수	1,389,126주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1,389,126주
총 출석 주식 수(위임장 주식 수 포함)	1,217,555주
총 출석 주식 비율(위임장 주식 수 포함)	87.65 %
미 참석 주식 수	171,571주
미 참석 주식 비율	12.35%

President 구자일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법정 수에 달하게 출석
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그 심의를 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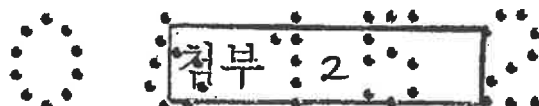
제1호 의안: 2020년 재무제표 보고 건

의장은 2020년 재무제표를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그 승인을 요청한 바,
참석 주주 1,217,555주(100%) 찬성하여 이를 승인하다.

총 의결수:	1,217,555주 (100%)	
찬 성:	1,217,555주 (100%)	참석: 994,265주(81.66%) 위임: 223,290주(18.34%)
반 대:	0주 (0%)	

제2호 의안: 2020년 활동 보고 및 현 상황 분석 보고

의장은 2020년 사업활동 및 현 상황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코로나사태로 인한 사



업 악화 상황을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참석 주주 1,217,555주(100%) 찬성하여 승인하다.

총 의결수:	1,217,555주 (100%)	
찬 성:	1,217,555주 (100%)	참석:994,265주(81.66%) 위임:223,290주(18.34%)
반 대:	0주 (0%)	

제3호 의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유상증자 건

의장은 2021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현 사업 악화 극복 및 'After 코로나' 대비를 위한 자금확보 방안으로 2021년도에 자체 유상증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참석 주주 1,217,555주(100%) 찬성하여 승인하다.

2021년 유상증자: 총 30만주

Class A 일반주식 (투표권이 있는 주식) - 30만주

총 의결수:	1,217,555주 (100%)	
찬 성:	1,217,555주 (100%)	참석:994,265주(81.66%) 위임:223,290주(18.34%)
반 대:	0주 (0%)	

제4호 의안: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 내용 추가의 건

의장은 제3호 의안인 2021년 유상증자를 위하여 현재 정관 내용 추가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정관 내용 추가 및 수정 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바 참석 주주 1,217,555주(100%) 찬성하여 승인하다. (Ferraris Inc. 추가 정관 내용: 첨부 1-EXHIBIT A)

총 의결수:	1,217,555주 (100%)	
찬 성:	1,217,555주 (100%)	참석:994,265주(81.66%) 위임:223,290주(18.34%)
반 대:	0주 (0%)	

제5호 의안: 유상증자 30만주 초과 발행 건



의장은 제3호 의안에서 언급한 2021년 유상증자가 필요시 30만주 이상 초과 발행되어도 진행 가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동의를 구한 바 참석 주주 1,217,555(100%) 찬성하여 승인하다.

총 의결수:	1,217,555주 (100%)	
찬 성:	1,217,555주 (100%)	참석:994,265주(81.66%) 위임:223,290주(18.34%)
반 대:	0주 (0%)	

제6호 의안: 한국법인 (주)페라리스파워 청산 검토 건

의장은 Ferraris Inc. 및 한국법인 (주)페라리스파워의 비용 감축을 위해 한국법인 (주)페라리스파워의 청산 가능성을 언급하고 설명하였으나, 주주 VIK(VALUE INVEST KOREA INC.)는 한국법인 (주)페라리스파워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Ferraris Inc.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청산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하다. 이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을 물으니 다음과 같이 의결하다.

총 의결수:	1,217,555주 (100%)	
찬 성:	873,480주 (71.74%)	참석:650,190주(74.44%) 위임:223,290주(25.56%)
반 대:	344,075주 (28.26%)	

기타 - 임시 주주총회 소집비용에 대한 청구

의장은 본 주주총회가 정기주총이 아닌 주주 VIK(VALUE INVEST KOREA INC.) 요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긴급 임시주주총회이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따른 비용을 주주 VIK(VALUE INVEST KOREA INC.)에게 청구할 것임을 주주총회 현장에서 구두로 통보하다.

의장은 기타 추가 심의할 사항 및 질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다.



기타 추가 심의 사항 및 질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주총회의 폐회에 대한
가부를 물으니 전원 이의 없이 승인을 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 폐회를 선언한 후 위 주주총회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
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다.

2021년 3월 9일

Ferraris Inc.

6617 S. Las Vegas Blvd. Building D,

Las Vegas, Nevada 89119 United States

의장 겸 President, Director JA-IL KOO

Sign

Director

Do Young Seung

Sign



이 사 회 의 공 고 문

페라리스파워 이사님들께.

대표이사 구자일, 사외이사 김영화, 사외이사 안재영.

당사는 아래 날짜와 장소에서 이사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 2021년 03월 09일 오후 15시

장소 : 대전 공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67번길 54(신일동)

협의할 의안은 지난번 협의 한 대로, Ferraris Inc. 본사 주주총회 후, Ferraris Power Co. Ltd 관련 issue 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미팅입니다.

제1호 의안 : 안재영 사외이사 사임 건 보고.

제2호 의안 : 2020년 3 월 중에 실시하는 Ferraris Inc.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서 페라리스 파워 소유의 특허를 Ferraris Inc. 로 이전을 전제로 한 페라리스파워의 법인 청산

제3호 의안 : 필요한 경우 청산 절차 진행 시 관련 청산인 선임 건.

제4호 의안 : 관련 주주총회 소집의 건 (2021 년 03월 23일)

2021. 02. 23

주식회사 페라리스파워

주식회사 페라리스파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6번길 4, 9층



이 사 회 의 사 록

2021년 3월 9일 오후 4시 당 회사 공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87-9, (주) 페라리스파워 공장)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 수 2 명
감사 총 수 명

출석이사 수 2 명
출석감사 수 명

의장 구자일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법정 수에 달하게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는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그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2020년 재무제표 사전 심의 및 감사 건

의장은 2020년 재무제표 사전 심의 및 감사 건을 상정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그 승인을 요청한 바, 전원 이의 없이 만장 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제2호 의안: 2020년 사업보고 및 2021년 사업계획서 검토 건

의장은 2020년도 사업 결산에 대한 설명 및 2021년 사업계획서와 같이 보고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전원 이의 없이 승인 가결하다.

제3호 의안: (주)페라리스파워 청산 진행 검토 건

의장은 2021년 3월중 실시하는 Ferraris Inc.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서 (주)페라리스파워 소유의 특허를 Ferraris Inc.로 이전을 전제로 한 (주)페라리스파워의 법인 청산 진행이 필요함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바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제4호 의안: 필요한 경우 청산 절차 진행 시 관련 청산인 선임 건.

의장은 ㈜페라리스파워 법인 청산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인 선임 및 청산 절차 확인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이에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제5호 의안: 주주총회 소집의 건

의장은 정기 주주총회 개최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일자 등을 정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예정된 사항에 대하여 그 승인을 요청한 바, 전원 이의 없이 만장 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1. 일자: 2021년 3월 23일(화요일) 오전 9시
2. 장소: 본점 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 9층 (수내동, 경동빌딩)
3. 안건:
 - 1) 제1호 의안: 2020년 재무제표 ~~제출~~ 승인의 건
 - 2) 제2호 의안: 2020년 사업보고 및 2021년 사업계획 검토 건
 - 3) 제3호 의안: ㈜페라리스파워 청산 진행 검토 건
 - 2021년 3월중 실시하는 Ferraris Inc.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서 ㈜페라리스파워 소유의 특허를 Ferraris Inc.로 이전을 전제로 한 ㈜페라리스파워 법인청산
 - 4) 제4호 의안: ㈜페라리스파워 청산을 대비하여 청산인 선임 및 청산 절차 보고 건
 - 5) 제5호 의안: 안재영 사외이사 사임 보고 건
 - 6) 제6호 의안: 기타

제6호 의안: 사외이사 사임 보고 건

의장은 당 회사의 안재영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외이사 직을 수



행하지 못하여 사임을 2020년 12월 30일자 요청하니 전원 만장일치로 안재영 사
외이사 사임을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기타 추가 심의할 사항 및 질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다.

기타 추가 심의 사항 및 질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회의 폐회에 대한 가부를
물으니 전원 이의 없이 승인을 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 폐회를 선언한 후 위 이사회 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다.

2021년 3월 9일

주식회사 페라리스파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6번길 4, 9층

의장 겸 대표이사

구 자일

(법인)

사외이사

김 영화



주주총회 의사록

2021년 3월 23일 오전 9시 당 회사 본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6번길 4, 9층(수내동, 경동빌딩) 회의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15 명
발행주식총수	1,518,519주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1,518,519주
출석 주주 수 (위임장에 의한 자를 포함)	6 명
출석 주식 수	1,512,219주
출석 주식 비율	99.59 %

대표이사 구자일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법정 수에 달하게 출석 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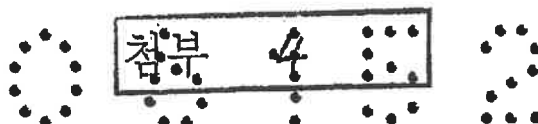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그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2020년 재무제표 심의 및 감사 건

의장은 2020년 재무제표 심의 및 감사 건을 상정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그 승인을 요청한 바, 참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하다.

제2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은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승인을 요청한 바 전원 이의 없



이 승인 가결하다.

제3호 의안: ㈜페라리스파워 청산 진행 검토 건

의장은 2021년 3월중 실시하는 Ferraris Inc. 유상증자 시, 4월 7일까지 최소 USD3,000,000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결과에 따라 ㈜페라리스파워 소유의 특허를 Ferraris Inc.로 이전을 전제로 한 ㈜페라리스파워의 법인청산 진행이 필요함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바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만일 Ferraris Inc. 유상증자가 특허 이전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특허를 이전하기 위한 다른 차선택 장구를 찾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페라리스파워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페라리스파워 소유의 특허를 Ferraris Inc.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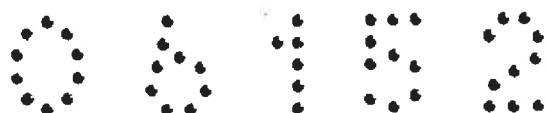
의장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페라리스파워의 특허를 설명하고, 이 중에서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현재 상태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이에 전원 만장 일치로 승인 가결하였다.

제4호 의안: 청산 절차 진행 시 관련 청산인 선임 건.

의장은 ㈜페라리스파워 법인청산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인 선임 및 청산절차 확인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청산인은 현 대표이사 구자일로 선임하고, 청산은 법적인 절차로 인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은 하되 절차를 진행하는 중간 과정에 법인청산이 필요 없게 되면 이를 중단하기로 하며, 이에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이는 청산을 진행하는데 적어도 2 - 3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의장은 기타 추가 심의할 사항 및 질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다.

기타 추가 심의 사항 및 질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기주주총회의 폐회에



대한 가부를 물으니 전원 이의 없이 승인을 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 폐회를 선언한 후 위 정기주주총회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다.

2021년 3월 23일

주식회사 페라리스파워

주식회사 페라리스파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6번길 4, 9층

의장 겸 대표이사

구 자일



0 6 1 5 2

첨부 2. 특허권 양도 관련 동화 내용

성낙민 관리인(이하 '성'): 피투자기업 한국법인이 비용이 현재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청산을 하고자 하는데, 한국법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대표는 본인이 발명자이기 때문에, 본인 것으로 하고 한국법인을 청산하겠노라고 제안을 해왔음. 당사의 지분은 미국의 모기업이 약 25%를 가지고 있고, 한국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당사는 대표에게 특허권을 가져가지 말고 미국법인에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음. 그 한국법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그대로 미국법인에 무상증여하든지, 유상매각을 하든지 제안하였으나, 대표는 그 특허권을 얼마간의 금액으로 사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법인에서 자본유치가 되면 그 때 유상매각을 하겠다고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표가 아무리 발명자라고 해도 회사에 귀속된 특허를 본인 임의로 정당한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법무법인 화우 신재열 변리사(이하 '신'): 당연히 안됩니다.

성: 안되지요? 그래서 그걸 제일 큰 문제로 삼았고, 회사 특허는 유상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고 평가를 하라고 했지만 가치평가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 안 된다고 한다.

신: 아무리 대표라도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른 주체임. 이 경우에는 대표라고 하지만, 개인과 법인의 계약관계이므로, 법인소유의 특허를 개인이 발명자라 하더라도 개인이 그 권리를 갖을 수는 없음. 대표이사인 개인이 특허권을 가져가고 싶다면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아서 나온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맞음.

성: 그 대표가 미국법인에 자본유치가 되면 유상 매각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가치라는 게 변동할 수도 있고...

신: 가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음.

성: 한국법인은 미국법인의 거의 100% 자회사인데, 실제로 특허권이나 설비 등 대부분이 한국법인 것임. 지금 대표 소유로 모두 변경해버리면 미국법인의 실질자산이 "0"에 가까워짐. 그러나 청산과정에서 다른 설비나 자산은 대표가 상계하고 가져가라고 할 수 있어도 특허권만큼은 적정가치만큼 유상매각을 하라고 권고를 했음.

신: 미국법인이 모회사고 한국법인이 거의 100% 자회사이고, 청산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자산은 미국법인에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맞음.

신: 그대로 해야 하나 법률적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특허에 대한 세 주체, 즉 한국법인, 미국법인, 그리고 대표이사 세 주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청산을 하고 가장 이익이 되는가를 합의해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보임.

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나머지 설비 등은 비용이 많이 나가니 대표가 가져가시되 특허는 주요 핵심자산이므로 미국법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유상

매각해야 하나 미국법인이 현금이 없으니 국내법인이 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법인이 확실하게 청산이 안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안되면 무상증여를 하라고 함.

대표이사가 이를 무상증여를 반대하는 이유가 나중에 자본유치를 할 때 그 특허권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없다고 함.

신: 그렇지는 않음. 무상증여는 현재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예를 들면 집을 팔 때 현금화를 위해 싸게 팔 수도 있고 그렇다고 현재 10억 가치가 5억에 팔았다고 해서 5억인 것은 아님.

성: 그렇죠. 특허의 내재가치가 중요한 것이지요.

신: 결론은 첫째, 세 주체가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없음. 둘째, 합의가 안 된다면 법에 의해 청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음

성: 첫째 세 주체가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할 때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한국 법인에 채무가 있고 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이 있을 때 이 채무를 변제할 만에 돈이 없다고 하면 특허권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법인에 무상증여를 해버리면 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음. 그런 것은 따로 고민해야 할 것임.

원래 이슈 정리 드리면, 세 주체가 합의해서 처리하면 된다. 둘째, 합의가 안되면 법에 의해 청산하면 된다. 이게 결론임.